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민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758 발 의 년 월 일: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민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남창진, 박상혁, 박춘선,

소영철, 신동원, 이민석, 이봉준, 이숙자, 이종태, 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
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에 따라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'접도율'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·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'6m 미만'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의 주택접도율 요건 산정 시,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을 적용토록 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(이 경우 주택접도율은 제2조제1 0호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 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	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
건)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	건) ①
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	
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(주택	2
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	
는 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	
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[법 제	
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	
도시계획위원회 또는 「도시	
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	
(이하 "도시재정비법"이라 한	
다)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	
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	
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	
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	
천제곱미터] 이상으로서 노후	
·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	
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	
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	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지역	

가. (생 략)

나.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

다. (생 략)

3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(이 경우 주택 접도율은 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)

다. (현행과 같음)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요건 중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'접도율'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・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'6m 미만'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공공정비계획수립을 통해 기추진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제외함

[출처] 2024년 서울시 예산서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 예산내역		
공공정비계획수립	○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250,000,000원*30개소	=	7,500,000
	= 7,500,000	천원	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이홍래

® 02-2180-7952

e-mail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